

[면허대여] 의사 명의대여 개설 의료기관(사무장 병원) + 형사처벌 규정 + 건강보험 요양급여

부정수급 환수 + 면허취소 등 관련 규정 정리



## 1. 의료법상 형사처벌 규정

의료법 제 87 조(벌칙) 제 1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**5년 이하의 징역**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 4 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
2. 제 33 조 제 2 항을 위반한 자.

의료법 제 4 조 제 4 항 의료인은 제 5 조(의사·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),

제 6 조(조산사를 말한다) 및 제 7 조(간호사를 말한다)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의료법 제 33 조(개설 등) 제 2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 또는 의원을,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, 한의사는 한방병원·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,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.

1.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또는 조산사
2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
3.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(이하 "의료법인"이라 한다)

## **2.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규정**

의료법 제 65 조 제 1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제 8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제 2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제 8 조제 4 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 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.

의료법 제 8 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

4. 이 법 또는 「**형법**」 제 233 조, 제 234 조, 제 269 조, 제 270 조, 제 317 조제 1 항 및 제 347 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「**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**」, 「**지역보건법**」, 「**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**」, 「**응급의료에 관한 법률**」, 「**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**」, 「**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**」, 「**혈액관리법**」, 「**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**」, 「**약사법**」, 「**모자보건법**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**금고 이상의 형**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의료법 제 66 조(**자격정지** 등) 제 1 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 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2.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

### 3.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규정

국민건강보험법 제 57 조(부당이득의 징수)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.

② 공단은 제 1 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1. 의료법 제 33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·운영하는 의료기관

2. 약사법 제 20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·운영하는 약국

### 4. 형법상 사기죄 + 특경법 적용

사무장 병원의 경우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
요양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.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한 행위는  
형법 제 347 조의 사기죄로 보는 것이 판결과 학설의 입장입니다. 의료급여법에 따른  
의료급여의 부정수급도 마찬가지로 봅니다.

그 부정수급 액수의 총합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죄로 평가하여,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 
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.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위험도  
있고, 재판에서도 실형으로 처벌된 위험도 있습니다. 부정수급 기간이 상당한 장기이거나  
단기라도 매출규모가 큰 약국이나 병원인 경우라면 특경법 적용대상으로 엄중한  
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상당한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.

자격증분쟁, 면허대여, 2중개설, 환수처분, 민형사소송, 행정소송, 전략적총괄대응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